# 제943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1 |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<br>(농림축산식품부) | 1.상임감사 선임 의무 지역 농축협 확대(강화)<br>o 최근 결산보고서 상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이 상임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<br><br>▶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6 | 1.비중요 |
| 2 |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<br>(산림청) | 1.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취소 등(신설)<br>o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의 사업을 희귀·특산식물의 조사·수집, 증식기술 개발·증식, 유전자 분석·연구, 보유·관리, 이용, 품종개발·보급, 교육·홍보 등으로 정함<br><br>o 국가희귀·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<br>–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: (1차 위반) 지정 취소<br>–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: (1차 위반) 경고, (2차 위반) 업무 정지 3개월, (3차 이상 위반) 지정 취소<br>–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:<br>(1차 위반) 경고, (2차 이상 위반) 지정 취소 | 1.비중요<br>2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| –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:<br>(1차 위반) 경고, (2차 위반) 업무 정지 3개월, (3차 이상 위반) 지정 취소<br><br>▶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<br><br>2.정원에서의 금지행위(신설)<br>ㅇ 정원에서의 금지행위<br>– 1.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<br>– 2.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행위,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<br>– 3.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<br>– 4. 그 밖에 정원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<br><br>▶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 |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3 |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<br>(해양수산부) | 1.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제한(신설)<br>○ (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선원 및 어선원 등에 대한) 양육책임 불이행 관련 재해보상 지급 제한 규정 신설<br>– 신청 주체(선박소유자→지방청장), 신청 절차(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), 보상제한 여부 결정(해수부장관) 및 판단사항 등을 규정<br>– (선박소유자) 관련서류*를 첨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심의 신청, 해양항만관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 · 지급<br>* 재해 보상 제한 신청서 +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,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보상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<br>– (해양항만관청) 지방청장 관련서류 접수, 사실관계 확인 · 조사 → 해수부장관 판단사항을 고려하여 보상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 · 결정<br><br>▶선원법 시행령 제31조의2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4 |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<br>(해양수산부) | 1.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(신설)<br>ㅇ (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선원 및 어선원 등에 대한) 양육책임 불이행 관련 재해보상 지급 제한 규정 신설<br>– 신청 주체(유족→수협중앙회), 신청 절차(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), 보상제한 여부 결정(해수부장관) 및 판단사항 등을 규정<br>– (선박소유자) 관련서류*를 첨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심의 신청, 해양항만관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 · 지급<br>* 보험급여 제한 신청서 +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,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보상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<br>– (수협중앙회) 관련서류 접수, 사실관계 확인 · 조사 → 해수부장관 판단사항을 고려하여 보상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심의 · 결정<br><br>▶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3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5 |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<br>(국토교통부) | 1.인증기관 지정,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(신설)<br>ㅇ 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인증기관의 재지정 방지를 위한 업무 추가<br>- 녹색건축법(법률 제19971호)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추가<br>ㅇ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 마련<br>- 녹색건축법(법률 제19971호)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 및 절차를 마련<br><br>▶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,제5조의2 | 1.비중요 |
| 6 |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<br>(중소벤처기업부) | 1.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(신설)<br>ㅇ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중 사업개시, 계속유지, 차별성,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<br>- (사업개시)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 유지<br>- (차별성)인지도, 독창성, 점유율, 수상실적, 지재권 등의 차별성을 보유<br>- (기여도) 장기고용, 법규 준수, 사회봉사 등의 기여도<br><br>▶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6 | 1.중요<br>2.중요<br>3.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| | 2.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판단기준(신설)<br>ㅇ 사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<br>ㅇ 사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에 종사<br><br>▶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<br><br>3.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(신설)<br>ㅇ 행정처분 이력 발생,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,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, 그밖에 백년소상공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<br><br>▶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7 | |
| 7 |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<br>(중소벤처기업부) | 1.백년소상공인 지정표시 및 지정의 유효기간(신설)<br>ㅇ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<br>ㅇ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·용기에 별표 1의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음<br><br>▶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 | 1.중요<br>2.중요 |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2.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(신설)<br>ㅇ 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, ❷ 요건 부적합, ❸ 부도 · 폐업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, ❹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 설정<br>- ▲ ❶은 1회 위반시 지정취소, ▲ ❷❸❹ 사유는 1회 위반시 경고, 2회 위반시 지정취소<br><br>▶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5</td><td></td></tr>
<tr><td>8</td><td>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<br>(국토교통부)</td><td>1.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(신설)<br>ㅇ 국토부장관이 지정 신청기간 종료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정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대상에서 제외<br>ㅇ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등 마련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위반사항</th><th colspan="3">처분기준</th></tr>
<tr><th>1차 위반</th><th>2차 위반</th><th>3차 위반</th></tr>
<tr><td>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</td><td>업무정지 (~90日)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</td><td>업무정지 (~90日)</td><td>업무정지 (~180日)</td><td>지정 취소</td></tr>
<tr><td>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</td><td>업무정지 (~90日)</td><td>업무정지 (~180日)</td><td>지정 취소</td></tr>
<tr><td>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</td><td>업무정지 (~90日)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/tr>
<tr><td>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td><td>업무정지 (~90日)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/tr>
</table>
▶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,제5조의2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9 |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<br>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| 1.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조치의무 강화(강화)<br>ㅇ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을 위한 조치 사항<br>– ①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한 접수 · 응답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처리시스템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의 마련<br>– ②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24시간 이내 실시간 응답, 시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 및 향후 처리 일정 통보<br><br>▶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<br><br>2.기술적·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신설(신설)<br>ㅇ 법제6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마련<br>–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1조원 이상,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 50만 이상의 회선설비 보유<br>– 기술적 · 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<br>– 기간통신사업자는 안정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<br><br>▶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3 | 1.중요<br>2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10 |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<br>(기획재정부) | 1.석유정제업자, 수출입업자, 판매업자 매점매석 등 금지(신설)<br>ㅇ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,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반출량 제한 등<br>– ‘24.6월 휘발유 등 반출·수입량은 유종별 전년동월 대비 115%(LPG부탄은 120%) 초과 금지<br>– ‘24.6월 중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금지<br>– 예외 사유(천재지변, 수출 물량 급증 등)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반출물량 등 조정 가능<br><br>2. 석유판매업자,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판매기피 제한 등(안 제5조)<br>– ‘24.6월 중 휘발유, 경유 및 LPG부탄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·보유 금지<br>– ‘24.6월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금지<br><br>3. 반출·수입물량 보고(안 제7조)<br>–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’ 24.6월 간 반출,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 가능<br><br>▶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, 제4조,제5조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11 |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<br>(국민권익위원회) | 1.공익신고자 변호사 조력 비용 환수(신설)<br>○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환수 절차 마련<br>–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환수 금액을 지급비용 전액 및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이자율을 곱한 이자 금액으로 규정하고 30일 이상의 납부 기한 부여<br><br>▶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3 | 1.비중요 |
| 12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<br>(보건복지부) | 1.자치단체장의 사실확인 조사 및 결과 통보(신설)<br>○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을 접수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<br><br>▶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4 | 1.비중요 |
| 13 |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<br>(보건복지부) | 1.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규정(신설)<br>○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규 배치 가능한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 규정<br>– 임상심리사 2급 이상,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, 장애영유아 보육교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의료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<br><br>▶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| 1.비중요<br>2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| | 2.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시 명단공표 범위 확대(강화)<br>ㅇ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 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<br><br>▶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4 | |
| 14 |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 | 1.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처분 강화(강화)<br>① 행정처분 세부기준 중 '지정요건 미달'에 관한 기준 세분화<br>- 포괄적 규정(지정요건 미달)을 구체적 규정(신청자 적격성, 장애인 근로자 고용, 장애인 근로자 생산, 중증장애인 직접생산, 기타)으로 세분화<br>② 장애인고용의무·직접생산 위반·품질보장 위반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<br>- 현행 기준보다 '지정 취소'의 적용차수 단축(4차→3차 등)<br><br>▶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15 |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<br>(통일부) | 1.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(신설)<br>○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요건<br>–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<br>–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<br>–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<br>– 그 밖에 지역적응센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<br><br>▶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| 1.중요 |
| 16 |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<br>(문화재청) | 1.전통재료 인증심사 대상 및 심사 기준 등(신설)<br>○ 국가유산 수리용 전통재료 인증 대상, 심사절차·기준 규정<br>– (인증 대상) 인증 세부기준이 마련된 것*에 한정<br>* ▲단청용 천연 무기안료 ▲단청용 인공 무기안료 ▲단청용 아교 ▲기와 및 벽전돌<br>– (심사 절차) 1차 서류심사 → 2차 현장심사 → 3차 품질시험<br>· (서류 심사) 신청인 제출서류에 대해 적정성 평가<br>· (현장 심사) 생산현장 방문 → 인력·기법·공정 적합성 여부 심사<br>· (품질 시험) 공인기관 등에서 품질기준 부합 여부 확인<br>– (심사 기준) 인증대상별 각 심사 세부기준 마련<br><br>▶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4, 제4조,제8조,제8조의2,제8조의3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17 |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<br>(환경부) | 1.계절관리제기간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구체화(신설)<br>ㅇ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집중관리대상인 민간배출시설의 범위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규정<br><br>▶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| 1.비중요 |
| 18 |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<br>(식품의약품안전처) | 1.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(강화)<br>ㅇ 주류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12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로 굵게 표시하도록 함<br><br>▶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의1<br><br>2.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제공 확대(강화)<br>ㅇ 감미료를 사용하여 무당,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조표시와 함께 감미료,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<br>ㅇ 소비자가 식품 제조·가공 시 사용한 감미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식품첨가물의 명칭 이외에 ‘용도(감미료)’를 함께 표시<br><br>▶식품등의 표시기준 제별지1 | 1.비중요<br>2.비중요 |